

토지거래허가구역 (재)지정 공고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(재)지정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7일

영 등 포 구 청 장

1. 허가구역 지정

○ 신속통합기획 추진지역(1개소)

시도	자치구	대상지역	면적(㎡)	지정기간
서울특별시	영등포구	신길동 113-5 일대	31,667	2026년 8월 11일 ~ 2027년 8월 30일

2. 허가구역 재지정

○ 신속통합기획 추진지역(3개소)

시도	자치구	대상지역	면적(㎡)	지정기간
서울특별시	영등포구	신길동 3922 일대	33,896.7	2026년 8월 31일 ~ 2027년 8월 30일
		신길동 314-14 일대	34,455	
		도림동 133-1 일대	63,654	

○ 공공재개발 추진지역(1개소)

시도	자치구	대상지역	면적(m ²)	지정기간
서울특별시	영등포구	도림동 26-21 일대	102,366	2026년 8월 31일 ~ 2027년 8월 30일

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(지정, 재지정 공통사항)

용 도 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6m ² 초과
	상업지역	15m ² 초과
	공업지역	15m ² 초과
	녹지지역	20m ² 초과
	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	6m ² 초과

- 4. 공고기간: 2026. 8. 7. ~ 2026. 8. 22. (15일간)
- 5. 공고(열람)장소: 영등포구 홈페이지,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
- 6. 알림사항: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(☎ 02-2670-3735)로 연락해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.